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최근 신선식품 택배 증가 등으로 아이스팩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이스팩은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 근본적인 감량 및 소재 전환 대책이 필요함. 아이스팩은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려우며, 매립 시에는 자연분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회수·재활용 체계가 미흡하여 재활용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아이스팩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인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아이스팩 냉매를 대체 소재로 전환하고 재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품·포장재를 제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서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포장재 양만큼을 감면해주고자 함.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의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유가 등 외부요인에 취약한 재활용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부과(안 제10조 및 별표2)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하는 아이스팩에 대해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kg 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되, 물·전분 등 다른 소재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재활용원료 사용시 재활용의무량 경감(안 제22조 및 제23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품·포장재를 제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서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포장재의 양을 감면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을 “제품”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하며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이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를 위한 재료나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자의 제품으로 본다.

제10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제2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플라스틱 사용량”을 “제조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9)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액이 연간 미합중국 화폐 9만달러 미만인  
플라스틱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플라스틱제품

4.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등의 정산절차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그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1. 해당 제품·재료·용기(포장재 포함)가 출고 또는 수입되지 않거나 수출된 경우
2.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부 후의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이미 납부한 금액과 징수·수납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

제14조의3제2항 진단 중 “차레만”을 “차레”로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관한”을 “관한 자료 및 전년도의 제품·포장재별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재활용제품(이하 “폐플라스틱 재활용제품”이라 한다) 사용량(제품·포장재에 폐플라스틱 재활용제품을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으로 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제조에 폐플라스틱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제품량을 감경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부과금”으로 한다.

제48조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3 및 제4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9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 및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에 관한 조사 및 확인(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의2. 법 제25조의5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고행연료제품 품질등급의 구분·공개

별표 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아이스팩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AP,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冷媒)로 들어 있는 아이스팩	전체 중량 kg 당 313원
---------	--	-----------------

별표 2 비고 제4호가목2) 중 “(미화) ÷ 수입액(미화, 달러)”을 “(미합중국 화폐) ÷ 연간수입액 [미합중국 화폐, 달러, 수입항도착가격(C.I.F.) 기준]”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위 표 제7호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 시 무게를 기준으로 하며,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적용례) 제10조제1항제7호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1일 이후 제품·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등의 정산절차에 관하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 략)</p> <p>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u>제품(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u>.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한다.</p> <p>&lt;신 설&gt;</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는 제1항에 따</p>	<p>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p> <p>-----</p> <p>-----</p> <p>-----</p> <p>----- <u>제품.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하며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이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를 위한 재료나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자의 제품으로 본다.</u></p> <p>7. <u>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u></p> <p>②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와 같</p>

른 제품·재료·용기에서 제외한다.

1.·2. (생략)

3. 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생략)

나. 수입업자가 연간 수입하는 양이 금액 기준으로 미화 9만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다.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만킬로그램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라. (생략)

마.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1) ~ 8) (생략)

9)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

바. (생략)

<신설>

다.

1.·2. (현행과 같음)

3. -----  
-----  
-----

가. (현행과 같음)

나.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액이 연간 미합중국 화폐 9만달러 미만인 플라스틱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플라스틱제품

다. -- 제조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  
-----

라. (현행과 같음)

마. -----  
-----  
-----  
-----  
-----

1) ~ 8) (현행과 같음)

<삭제>

바. (현행과 같음)

4.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

제14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정산절차 등) 환경부장관은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재료·용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자의 청구를 받아 해당 폐기물부담금을 그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등의 정산절차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을 그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1. 해당 제품·재료·용기(포장재 포함)가 출고 또는 수입되지 않거나 수출된 경우

2.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부 후의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이미 납부한 금액과 징수·수납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

제14조의3(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① (생략)

제14조의3(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 ⑦ (생략)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 등) ① (생략)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

③·④ (생략)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② (생략)

② -----  
-----  
-----  
-----  
----- 차례 -----  
-----  
-----  
-----  
-----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관한  
자료 및 전년도의 제품·포장재  
별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  
한 재활용제품(이하 “폐플라스  
틱 재활용제품”이라 한다) 사용  
량(제품·포장재에 폐플라스틱  
재활용제품을 사용한 경우만 해  
당한다)에 관한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② (생략)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생략)

<신설>

음)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제조에 폐플라스틱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제품량을 감경할 수 있다.

제28조(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 ----- 재활용부과금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9조의4에 따른 개선 명령 및 제조·수입·판매 중 단명령에 관한 조사 및 확인

1의2. · 1의3. (생략)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 4. (생략)	1의3. · 1의4. (현행 제1호의2 및 제1호의3과 같음)
<신설>	2. ~ 4. (현행과 같음)
4의2. · 4의3. (생략)	4의2. 법 제25조의5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고품연료제품 품질등급의 구분 · 공개
5. ~ 20. (생략)	4의3. · 4의4. (현행 제4호의2 및 제4호의3과 같음)
④ · ⑤ (생략)	5. ~ 20.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연락처	(044) 201 - 7381